『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현행 「동물보호법」 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유기동물

입양 시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또한 피학대동물 보호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.

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민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5조제2항에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며,

안 제14조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안 제22조제2항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
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,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또한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